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 8 / 10 통권 158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진짜 즐겁고 맛있는 직장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처음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판단과 준비할 사항 및
초도감사 매뉴얼 등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법인의 균등분주민세는 8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인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프로젝트 금융회사(PFV)의 법적분쟁 공사지연으로 존립기간 연장도 한시적 회사로 봄 (p.14)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畧

<기업근무개인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비교>

개념 구분, 조문	(정규)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개념, 목적	소득자와 소득액, 원천징수세금 등을 모두 파악(연단위 소득과 세금징수 등)	소득자와 소득금액만 파악 집계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정보 파악)
정규 근로소득	1년 단위 연말정산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	6개월 상반기(1-6월)는 7월말 6개월 하반기(7-12월)는 다음 해 1월말
일용근로소득	매월 지급액과 세금을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안 됨
퇴직소득	퇴직소득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10일	해당 안 됨
사업소득	1년 단위 지급액(또는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3월 10일	매월 단위 지급액을 다음 달 말까지
이자·배당소득	1년 단위 지급액을 다음 연도 2월말	해당 없음
연금·기타소득	1년 단위 지급액을 다음 연도 2월 말	해당 없음
종교소득·봉사료	1년 단위 지급액을 다음 연도 3월 10일	해당 없음
금융투자소득	금융소득 발생 반기(6개월 단위) 다음 달 말일	해당 없음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83호 / 주간 32호

2022. 8. 10.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기업 근무 개인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처음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판단과 준비할 사항 및 초도감사 매뉴얼 등	2
C E O 에 세 이	진짜 즐겁고 맛있는 직장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상대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시 - 부동산 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문의 - 회사보유 의 오토바이를 직원에게 경매 시 문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법인의 균등분주민세는 8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택분 중부세율 개편안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황	10 11
직 장 인 Survival	부자되는 6단계 원칙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 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 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사전법령재산-994, 2021.12.29) -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 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 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 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 항임 (사전법규소득-1872, 2022.01.18)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코로나 손실보전 중소기업 3개월 납부연장	15
마케팅 Tax consulting	프로젝트 금융회사(PFV)의 법적분쟁 공사지연으로 존립기간 연장도 한시적 회사로 봄	14
세 무 정 보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16 33 3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32

처음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판단과 준비할 사항 및 초도감사 매뉴얼 등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 외부감사대상 기준 확인(12월 말 법인의 3월 31일 세무신고서 상)
 - ① 전년도 자산총액 500억 이상
 - ② 전년도 매출액 500억 이상
 - ③ 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이상, 부채액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의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유한회사는 +사원수 50인 이상 5개 중에서 3개 해당)
- 초도감사기업의 자유계약일 : 12월 말 기준 4월말까지 계약 → 5월 14일까지 증선위 계약 공시
- 외감계약 · 공시 안한 기업 : 연중 9월경까지 금감원의 외감계약 촉진 공문 발송 + 이후는 감사인 강제지정, 배정 통지함.
- 금감원 사이트에서 각 기업의 외부감사 고유번호 부여받음.
- 자체기장이면 전환여부 검토
 - ①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외부기장 맡기면, 자산·부채의 정확한 회계처리가 어려움.
 - ② 특정 회계법인의 기장 거래처이면 → 기장반납, 기업 자체기장 유도 후 → 해당 특정 회계법인과도 외부감사계약 가능
 - ③ 특정 회계법인이 계속 기장하려면 → 다른 회계법인에 외부감사계약을 안내해야 함(기장 · 감사의 중복 금지)
-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엄격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안 맞으면 비적정 의견
 - ① 세법(부가세법, 법인세법)기준 아닌, 발생주의 등 회계기준으로 수익인식

- ②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보수적 평가(모든 거래에 발생주의와 보수기준 적용)
- ③ 유형자산 평가와 감가상각
- ④ 주식·유가증권 등 평가
- ⑤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 등

7. 기초이월재고자산의 엄격한 실사

- ① 초도감사 전년도에 대한 임의감사 수행: 이월재고확정
- ② 전년도 임의감사 안하면 당년도 초도감사보고서 의견은 이월재고 한정 원칙임
- ③ 재고자산 이외의 전기이월 자산·부채도 엄격한 금액 판단

8. 모든 자산·부채 중 대외거래는 외부조회서 준비

- ① 금융채권·채무조회서: 금융거래금액과 명세 파악
- ② 외상채권·채무조회서: 금액, 거래내용, 주소 파악
- ③ 기타 외부채권·채무조회서도 준비함: 명세, 주소, 금액 등

9. 초도감사 연중 외감절차

- ① 올해 5월 14일까지 계약 공시
- ② 6월말 기준 반기검토(대형 법인)
- ③ 10-11월경 중간감사
- ④ 12월말 기준 1월 초 재고실사와 금융·채권채무조회서 발송
- ⑤ 결산완료 + 재무제표 작성 제출받음
- ⑥ 다음 해 2-3월 중 연말감사(3월 말 확정)
- ⑦ 4월 14일까지 감사결과 공시

진짜 즐겁고 맛있는 직장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미국에서 9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편 경영(management by fun)'이란 직원들이 유머훈련을 받게 하여 직장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이를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21세기형 경영전략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입사면접 때 응시자로 하여금 면접관을 웃겨보라거나 최근에 남을 웃긴 게 언제였는지 등을 물어 점수에 반영하기도 한다.

'편 경영'의 저자 미국의 매트 와인버거는 AT&T를 비롯한 대기업 400여개사에 편(fun)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기도 했다. 튀빙겐에서 편 연수회사를 세운 페터 블라이트는 '웃음은 벽에 막힌 사고방식을 뚫어주고 나아가 상하간, 부서간 벽도 허물어 준다'고 강조한다.

한국 P&G의 CEO 앨 라즈와니 사장도 '직장은 반드시 재미있고 멋진(fun and cool)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하간 삶의 중요부분인 직장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성원이나 기업이나 사회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실패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말 진짜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기업풍토는 편 경영같은 표피적 전략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공정한 인사와 보수 시스템, 투명한 민주경영 등 갖추어야 할 경영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 그 중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패를 격려하기'기업문화 창달이다.

21세기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 세계다. 그래서 경영이란 시행착오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구성원들은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일탈적인(deviant)'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흔히 아이디어 상품을 무수히 개발

한 혁신적인 기업으로 3M이 거론된다. 스카치테이프, 욕실 미끄럼방지 테이프, 오버헤드 프로젝터 등 수천개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빛나는 기업이다. 그것은 신제품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에 가능했다. 쓸모잡잘한 '포스트 잇'도 접착제로 만들어졌다가 접착력이 약해 폐기처분됐다. 그러나 한 직원의 집념으로 히트 상품으로 변신했다. 바이엘사의 아스피린도 원래 염료로 개발되었다가 실패한 제품이고, 노벨의 다이내마이트도 실패과정에서 얻은 결실이 아닌가.

발명왕 에디슨은 2000번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친 후 전등을 발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2000계단을 올라간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실패는 고효율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상당수 한국기업 현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 분위기로 도전을 회피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자산은 '미래 잠재력의 현재 가치'다. 결국 '실패의 자산화'는 실패의 경험을 잘 살려 '실패에 대해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를 그냥 덮어 버리거나 질책만 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체험을 습득하라는 본래의 뜻과 실패를 두려워말고 과감하게 도전(Risk taking)하는 기업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패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 기업인 GE(General Electric)는 창업 이래 중요한 사고나 고장 등 실패정보를 기록하여 보물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미국경제의 강점은 도전하다 실패한 사람을 전과자처럼 백안시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데 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여러 차례 파산의 아픔을 겪었다. 또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에서 쫓겨 났다가 다시 복귀하여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성공하는 조직은 실패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실패로부터의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른바 실패의 자산화를 위해서는 '기록'과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대체로 한국인에게 부족한 것이 기록하는 문화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같은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대체로 흐지브지가 관행처럼 되어왔다. 이러한 오랜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다. 또 이 가운데 쓸모있는 정보를 선별, 사내 인트라넷과 각종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실패를 조직의 활력으로 연결시키는 '실패 친화도'가 높은 기업이 되어야 한다.

'실패 파티'를 열어 실패한 사람이 사례를 발표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관계 구성원 모두 함께 다짐하는 것도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도 선진국의 노하우를 전수 받던 때와는 달리 스스로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실패를 격려하고 연구하는 것이 진짜 웃음이 넘치고 멋있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진기업으로 가는 첩경이 아닌가.

상대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시

Q 당사는 거래중인 상대거래처에서 단가 인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측의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22.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하였고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신고(당사는 매월 조기환급신고 업체)를 하였는데 질문인 즉 단가협의를 절충이 되지 않으면 1기 확정 신고기간에도 당사가 지금처럼 대응해도 될런지 여부입니다.

A 공급가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 신고반영한 뒤,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자인 귀사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Q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21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이월결손금공제가 100% 가능한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업의 경우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과 규모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이월결손금 공제 100% 적용도 가능합니다.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문의

Q 당사는 관계사로 부터 100억원 정도의 설비를 수입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설비와 관련된 수선유지부품 4억원(수선유지주기 2~3년), 설비작동을 확인(시운전)에 필요한 원자재도 1억 원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에 케이스 별로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동시구매 일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2.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동시구매 별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3.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별도구매 별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별도구매시 구매시기를 상이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A 세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는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투자에 범위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제24조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 기계장치 이외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설비와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모두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용 유형자산에 설비 이외의 수선유지부품 등이 포함되느냐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사보유의 오토바이를 직원에게 경매 시 문의

Q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직원들에게 사내경매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보다 낮게 경매를 진행하여 장부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직원이 취득할 경우에 세무상 이슈가 있나요?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야하는건지?)

A 회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직원과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여 회사가 손실을 입어 법인세 부담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시세에 근접한 경매가격이면 타당합니다.

법인의 균등분주민세는 8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 균등분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납기일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고 부과된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법인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인데,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본점·지점·영업소 및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각 시·군에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설치된 공사현장사무소 등은 당해 공사를 직접 담당한 사업소(본사 또는 지사 등)에 소속된 부설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사무소에서 노무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가 현장사무소 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되고 당해 공사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독립된 사업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세정과-1757, 2004.06.28

백화점 내 임차형 매장이 아닌 입점형 매장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판촉활동을 한 것은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균등분주민세의 부과대상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 행심 2003-111, 2003.5.26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였

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 균등분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지 및 납부기간

법인 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각 시·군내에 등재된 사업소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지는 각 사업소 소재지이며 8월16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균등분주민세의 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초과 100억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법인 균등분주민세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각 사업소의 종업원 수에 따라 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출자금을 적용한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되어있는 자본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이 없는 법인은 기타법인의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종업원 수의 계산은 지방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는데,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임원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주택분 종부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18년 이전	'19~'20년		'21년 이후		개정안
		일반	다주택	일반 (2주택 이하)	다주택 (조정대상 2주택)	
3억 이하	0.5	0.5	0.6	0.6	1.2	0.5
3억~6억		0.7	0.9	0.8	1.6	0.7
6억~12억	0.75	1.0	1.3	1.2	2.2	1.0
12억~25억	1.0	1.4	1.8	1.6	3.6	1.3
25억~50억						1.5
50억~94억	1.5	2.0	2.5	2.2	5.0	2.0
94억 초과	2.0	2.7	3.2	3.0	6.0	2.7

화

다주택자 종과세의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구분			2주택		3주택 이상	
양도 가액	양도 차익	보유 기간	현행(종과)	개정(종과 배제)	현행(종과)	개정(종과 배제)
15억원	5억원	10년	2억7,310만원	1억3,360만원 (종과대비 △1억 3,950만원)	3억 2,285만원	1억3,360만원 (△1억8,925만원)
20억원	10억원	15년	5억8,305만원	2억5,755만원 (△3억2,250만원)	6억8,280만원	2억5,755만원 (△4억2,525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총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구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구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 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OECD 디지털세 초안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초과 다국적 기업

◎ 과세권 배분

- 통상이익(이익률 10%)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해시장 소재국에 배분

◎ 향후 일정

- 간소화된 집행절차 등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 2024년 시행



부자되는 6단계 원칙

영국의 부자 멘토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매케나는 놀라운 부를 성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부의 6단계 원칙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 : “열정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라”
성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유리하다.

제2단계 : “새로운 가치 창출 방법을 강구하라”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는 누군가’,
‘그는 왜 성공했나’ 등 관심 분야를 세밀히 분석하라.

제3단계 : “행동하기 전 경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구상하라”
커즈너 인터내셔널 홀딩스 회장 솔 커즈너는
호텔을 짓기 전 머릿속으로 건물 표면 질감 까지 그려볼 정도였다.

제4단계 : “정확히 평가해 위험을 감수하라”
영화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커스는 흥행에 실패해도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옳은 선택이었다.

제5단계 : “빠르게 행동하라”
매케나가 만난 사업가 대부분은 사업 구상이 끝난 뒤 24시간 내 행동에 착수했다.

제6단계 :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계속 나아갈 것”
낙관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좌절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라.

최 신 판 례 예 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 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 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사전법령재산-994, 2021.12.29

질 의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의 1세대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 §155① 1세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 종전주택 양도기한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2021.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 · 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476, 2021.12.30

질 의

- (질의1)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기간 계산 방법
- (질의2) 감정평가목적어 증여세 납부가 아닌 일반 거래 또는 담보인 경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이

액이나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소득-1872, 2022.01.18

■ 질 의

- 질의인은 건강검진 결과 지방간, 복부지방과대, 고혈압 등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 원인인 복부비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음
-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이었기 때문에 연구리살 등은 제외한 복부만 수술받음

질의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프로젝트 금융회사(PFV)의 법적분쟁 공사지연으로 존립기간 연장도 한시적 회사로 봄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서면법인-7995, 2022.01.19

■ 질 의

- 질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 존립기간(2년 이상)을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
- 질의법인은 빌딩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와의 소송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
-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익성 강화 목적으로 미판매 건물을 임대 후 상황 호전시 매각하기로 하여 PFV의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고려 중

질의

- 부동산 경기 및 주변 상권이 회복된 이후 수익성이 제고되면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시 PFV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한시성 요건 충족 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신축 중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3호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코로나 손실보전 중소기업 3개월 납부연장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 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개인분은 16일부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독려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

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상장사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8월 말까지 신고 납부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상장사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 70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나 올해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안내문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 등에서는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은 신청을 받아 기본 3개월간 납부연장을 허용되 어려움 상황이 지속될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2. 8

- ◆ (신고개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법인
 - **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군산, 영암, 목포, 해남, 울진, 삼척, 강릉, 동해
 - 그 밖의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 (신고편의) 신고 전에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4만 개 증가한 51.5만 개입니다.
-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1.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22. 1. ~ '22. 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구분	계산 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중간예납 세액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법인세는 제외) </div>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6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div>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 세액	=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세정지원을 이용하세요

- ◆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분		세정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매출 감소 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20. 8. 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	집합금지, 영업시간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1. 3분기~'22. 1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특별재난지역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 명단 제공

- ◆ (신청연장) 그 밖의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검토하여 세정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 (연장기간)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3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

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1 -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 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매출액 60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매출액 400억 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로 한다.

참고 2 -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 × 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구분	계산 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중간예납 세액 </div> = <div style="border: 2px dashe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 제외)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frac{6}{\text{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div>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구분	계산 방식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중간예납 세액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div>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2.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63조의2②(1))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 직접작성 방식과 전송(파일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직접작성 방식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전송(파일변환) 방식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22. 8. 31. 24:00

참고 3 -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22. 1. 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63조)

-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li style="text-align: center;"><추 가>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좌 동)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증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추 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 (좌 동)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22. 2. 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증 전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불특정다수인 대상) -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초과 : 접대비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이하

* '21.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증 전	개 정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 원 이하 ○ (그 외) 1만 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3만 원 이하

* '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종 전	개 정
<p>◆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적용기한) '21. 12. 31. 	<p>◆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 ○ (좌 동) ○ (적용기한) '24. 12. 31.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종 전	개 정
<p>◆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1. 12. 31. 	<p>◆ 적용기한 2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3. 12. 31.
<p>◆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중소기업 ○ (적용기한) '21. 12. 31. 	<p>◆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중견기업 추가 ○ (적용기한) '23. 12. 31.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종 전	개 정														
<p>◆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p> <p>*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①과 ② 모두 충족 ①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②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 (공제율) 2단계 구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기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제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일 이내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6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1%</td> </tr> </tbody> </table>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p>◆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단순화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기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제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일 이내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3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1~6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15%</td> </tr> </tbody> </table>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증 전					개 정																																													
◆ 기업의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식)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 단계 구조 ○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신 설>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좌 동)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table border="1"> <tr> <th>R&D 비용(%)</th>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h></th> </tr> <tr> <td>일반</td> <td>2</td> <td>8</td> <td>25</td> <td></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 colspan="2">20-30</td> <td>30-40</td> <td></td> </tr> </table>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table border="1"> <tr> <th>R&D 비용(%)</th>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h></th> </tr> <tr> <td>일반</td> <td>2</td> <td>8</td> <td>25</td> <td></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 colspan="2">20-30</td> <td>30-40</td> <td></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 colspan="2">30-40</td> <td>40-50</td> <td></td> </tr> </table>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신 설>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시설투자(%)</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r> <td>일반</td> <td>1</td> <td>3</td> <td>10</td> <td>3</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5</td> <td>12</td> <td></td> </tr> </table>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시설투자(%)</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r> <td>일반</td> <td>1</td> <td>3</td> <td>10</td> <td>3</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5</td> <td>12</td> <td></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d>4</td> </tr> </table>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21. 7. 1.~'24. 12. 31.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증 전	개 정
<신 설>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기술 등 9개 기술 ○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21. 7. 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증 전	개 정
<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성과급 요건)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②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1. 12. 31. 	<p>◆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삭 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4. 12. 31.

* '22. 1. 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증 전	개 정
<p>◆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2. 12. 31. 	<p>◆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좌 동) ○ (좌 동)

* '22. 1. 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증 전	개 정
<p>◆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p>◆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22. 1. 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증 전	개 정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요건) '20. 6. 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기업,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1. 12. 31.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요건 정비 (㉠, ㉡ 모두 충족) ㉠ '21. 6. 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등) - 특수관계인 제외 ○ (적용기한) '22. 12. 31.

* '22. 1. 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증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① 또는 ② ①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1. 12. 31.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① (좌 등)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4. 12. 31.

* '22. 2. 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증 전	개 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22. 2. 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증 전	개 정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대 분야* 260개 기술 * ⑬“탄소중립”분야 신설 <p>- (탄소중립)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4)</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CCUS(7)</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8)</td> <td style="text-align: center;">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재생E(12)</td> <td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공정(11)</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E효율·수송(10)</td> <td style="text-align: center;">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td> </tr> </table> <p>-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p> <p>*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파우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현행 기술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포함 · (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div> <p><삭 제></p> <p>◆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p>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5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2)
9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 별로 작성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29일 (금)	8월 1일 (월)	8월 2일 (화)	8월 3일 (수)	8월 4일 (목)
미 달 러 (USD)	1304.00	1298.60	1306.40	1307.20	1310.50
일 본 엔 (JPY)	970.53	973.43	993.08	981.57	977.66
영 국 파 운 드 (GBP)	1587.36	1580.59	1601.45	1589.56	1591.08
캐 나 다 달 러 (CAD)	1018.19	1013.82	1017.37	1014.91	1019.80
홍 콩 달 러 (HKD)	166.12	165.44	166.42	166.53	166.96
위 안 화 (CNH)	193.35	192.37	193.14	192.67	193.71
유 로 화 (EUR)	1329.30	1326.78	1341.22	1328.77	1331.60
호 주 달 러 (AUD)	912.34	906.55	918.20	903.54	910.40
싱 가 폴 달 러 (SGD)	945.30	939.92	949.18	944.88	949.1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2.85	291.79	293.38	293.49	294.03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 국세청, 2022. 7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 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22년 7월 29일부터 개통합니다.
-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활용사례) 포장이사사업자 A씨는 소비자 B씨에게 이사비 1백만 원을 7월 28일 계좌 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발급을 누락하였다. B씨가 7월 29일 발급사실 알림이 없어 A씨에게 연락하자 A씨는 그제야 누락 사실을 알고 즉시 발급
-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월 ○일 현금영수증 ○천, ○○○원이 발급되었습니다.” 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발급일(00:00~24:00)의 다음날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 알림 전송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개요

구분	내용
대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건	① 손택스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② 손택스 앱에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 (손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③ 손택스 앱에서 발급사실 알림 수신동의 * (손택스) 우측상단 “≡” > 설정 >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수신동의 설정 “ON”
개시	'22. 7. 29. (금) 부터

참고 2 - 자주 묻는 질문 (FAQ)

1.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을 발급일 다음날에 전송하는 이유는?

- ▶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발급일의 다음날에 국세청으로 전송하여 발급 내역 자료가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이용절차와 서비스 이용 시작일은?

- ▶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손택스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 ②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
* (손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③ 손택스 앱에서 발급사실 알림 수신동의*
* 우측상단 “≡” > 설정 >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수신동의 설정 “ON”
- ▶ 수신동의를 하면 수신동의한 다음날부터 알림 수신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 ▶ 서비스 이용대상은 소비자이며, 본 서비스는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용절차는?

- ▶ 손택스 앱에서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소비자 발급수단을 변경*하시면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2022. 7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집중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①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② 공정경쟁 저해, ③ 생계기반 잠식, ④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4개 유형 99명입니다.
 - (유형 ①)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 * 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
 - (유형 ②) 위법·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
 - *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병원 /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
 - (유형 ③)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19명)
 - * 불법 대부업자(미등록·대부 광고업체) / 악덕 임대업자(주거용·사업장)
 - (유형 ④)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
 - *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 장례식장, 공원묘원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물가의 상승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



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가격담합 등으로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공정한 조세부담과 공정경쟁 지원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서민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서민경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취임사(6.14.) 및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7.22.)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2 조사대상 선정 및 착수

-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혐의(①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② 공정경쟁 저해, ③ 생계기반 잠식, ④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를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주부터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4개 탈세유형 총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서민 기본생활 폭리	② 공정경쟁 저해	③ 생계기반 잠식	④ 부양비·장례비 가중
33명	32명	19명	15명

【분야별 세부 유형】

- ① 떡거리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 ① 식자재 업체 : 장바구니·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 ② 외식 업체 :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카페
 - ③ 주택유지·보수 업체 : 담합행위·부실시공 주택 유지보수업자, 인테리어 업체
- ② 위법·불법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자
 - ①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병원 : 실손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브로커 조직 및 연계 병원
 - ②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중고전문판매업자

- ③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자
 - ① 불법 대부업자 : 불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하는 사채업자
 - ② 약덕 임대업자 :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하는 임대업자
- ④ 가족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
 - ① 고액 입시학원 :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 ② 장례시설 :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례식장, 공원묘원

3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유형1,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

□ 첫 번째 유형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며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탈세혐의자 33명입니다.

【사례1】 폭리를 취하며 법인자금으로 호화생활 한 식품 도소매업체 ※ 붙임 착수사례 1번

- ◆ 식품 도소매업체 □□□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또한,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를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림

【사례2】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며 탈세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붙임 착수사례 2번

- ◆ 프랜차이즈 본사 □□□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분여
 - 또한,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



【사례3】 가격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주택 보수공사업체

※ 붙임 착수사례 3번

- ◆ 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 □□□는 동종업체와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주의 친척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여 가공 경비 계상
 - 사주의 주택 신축비용을 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 법인자금 수십억 원을 부당 유출

【유형2,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

□ 두 번째 유형은 위법·불법 행위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경비를 허위 계상하거나 매출 누락하는 탈세혐의자 32명입니다.

【사례4】 실손보험청구를 불법 알선한 브로커 및 연계병원

※ 붙임 착수사례 4번

- ◆ 브로커 조직 □□□는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여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 또한,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게 지급한 불법 환자 유치 수수료를 판관비로 계상하여 부당 경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사례5】 건전한 중고거래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중고전문판매업자

※ 붙임 착수사례 5번

- ◆ 중고전문판매업자 □□□는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
 -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대부하며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사치 생활 영위

【유형3,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

□ 세 번째 유형은 절박한 서민에게 고리로 대부하거나 임대료를 높게 받으며 소득을 신고 누락한 생계기반 잠식 탈세혐의자 19명입니다.

【사례6】 영세사업자 상대로 고리 자금 대여 미등록 대부업자

※ 불임 착수사례 6번

- ◆ 미등록 대부업자 □□□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며 원리금을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 신고를 누락
-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탈루

【사례7】 법인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소득 신고 누락한 사업자

※ 불임 착수사례 7번

- ◆ □□□은 유명 음식점의 사주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누락
- 또한, 법인은 사주가 보유하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유형4,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탈세자】

□ 네 번째 유형은 부양가족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가족 부양비나 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혐의자 15명입니다.

【사례8】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예체능 입시학원

※ 불임 착수사례 8번

- ◆ 예체능 대학 전문 입시(컨설팅)학원 □□□는, 자녀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사례9】 지점 사업자 등록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공원묘원

※ 불임 착수사례 9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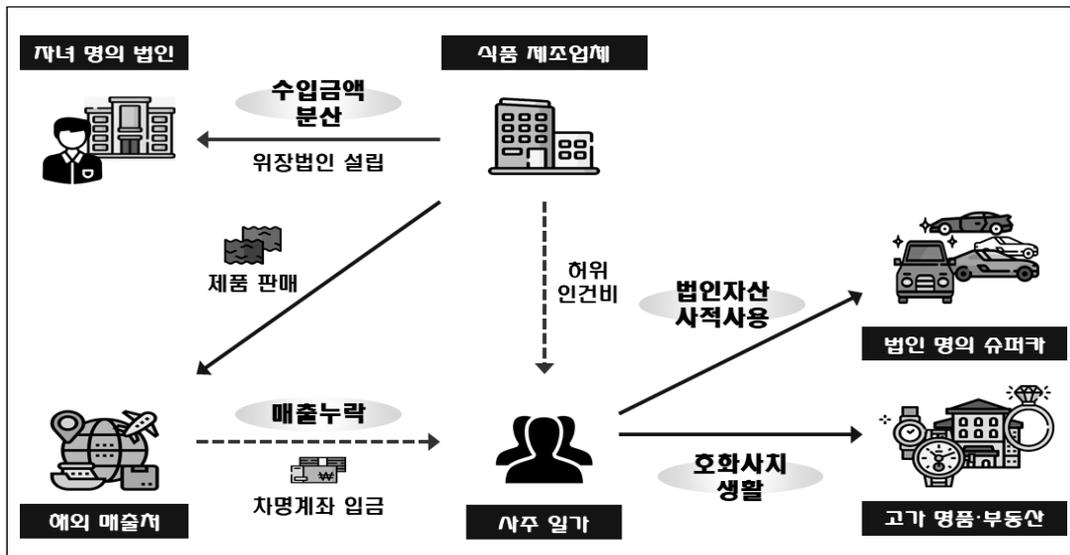
- ◆ 평장·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증가한 □□□는, 본점 외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점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며,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 또한,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4 향후 계획

-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그간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 조사유예를 비롯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붙임 - 조사 착수사례

사례 1 사주 자녀가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식품 제조업체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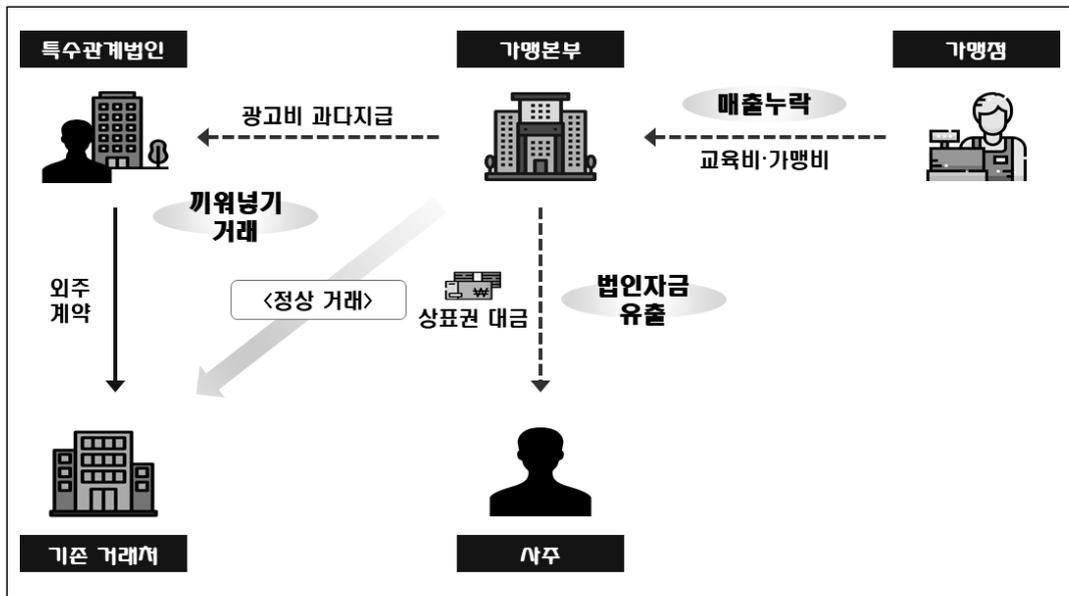
- 웰빙 식품 제조·수출 업체 대표 ○○○은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수십억 원의 매출을 분산하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 또한, 사주 자녀는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최고가 약 7억 원, 총액 약 26억 원)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법인카드를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림

□ 조사방향

⇒ 매출 분산·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사례 2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사주일가에 부당이익 분여, 법인자금
편법유출한 프랜차이즈 업체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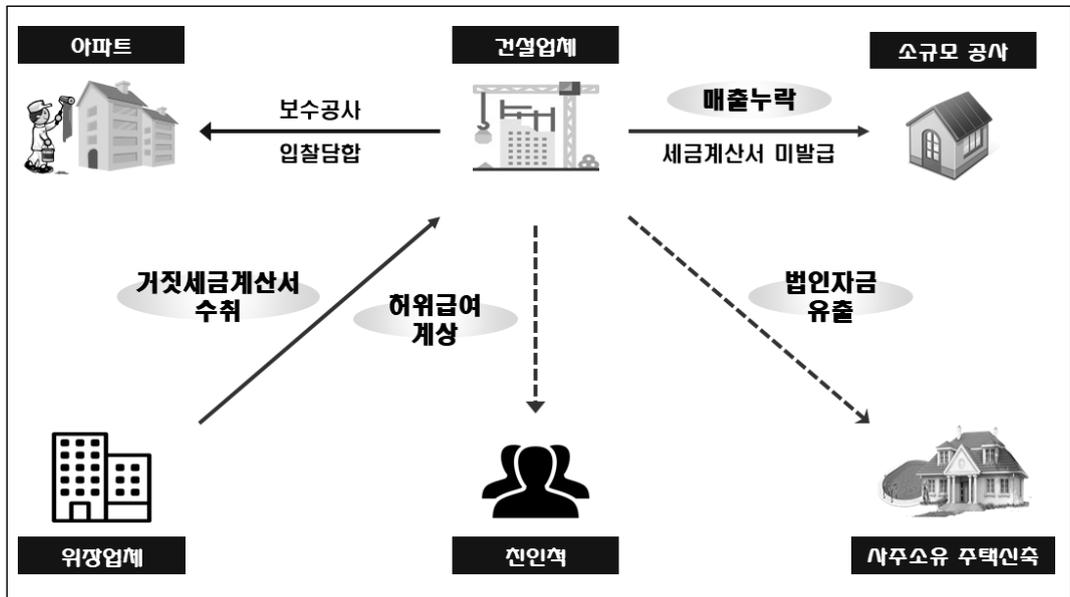
- 외식·배달문화 확산으로 최근 매출이 크게 증가한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은
 -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리면서 신규가입 시 받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과소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업체를 설립한 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 분여
- 또한, 법인 개발 상표권 십여 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 후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 십억 원을 지급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

□ 조사방향

⇒ 매출 분산·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사례 3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아파트 보수공사업체



□ 주요 탈루혐의

-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 □□□는
 - 동종업체와 담합하여 입찰 가격을 조정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규모 공사는 할인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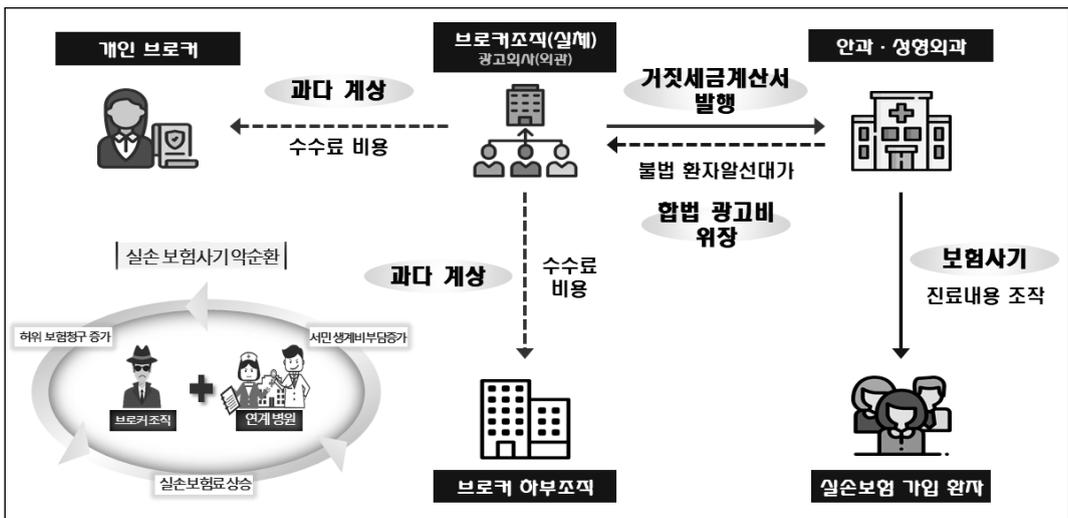
- 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 신고 누락
- 대단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수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자,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업주부인 사주의 배우자, 고령의 친척에게 급여를 허위 지급
- 또한, 사주의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설계·자재비용을 법인의 공사원가로 허위계상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

□ 조사방향

⇒ 매출누락, 허위경비·업무무관비용 계상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4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연계 병원



□ 주요 탈루혐의

- □□□는 외관상 광고업체이나 실제로는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으로
 - 환자의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과·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실손보험금을 편취
 - *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과도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보험가입자 전체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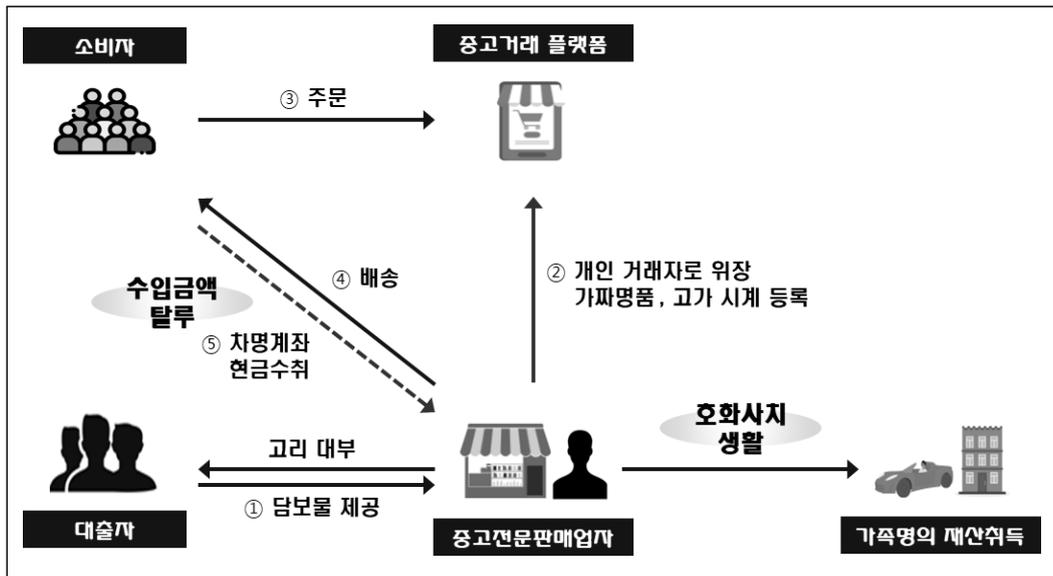
- 또한, 병의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환자 알선대가를 수취하면서 정상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을 과다 계상
- 한편, 해당 병의원들은 실손 보험금 편취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브로커 조직에 지급한 불법 알선대가를 정상 광고비로 처리

□ 조사방향

⇒ 브로커 조직과 연계 병의원 및 하부조직의 탈루 혐의 일괄 조사

사례 5

무자료 매입상품, 고리대부 담보물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거래로 위장·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판매업자



□ 주요 탈루혐의

-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한 중고 전문 판매업자 □□□는
 -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 계정을 운용하며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개인 간 거래(C2C)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 신고 누락
- 또한, 전당포업도 영위하면서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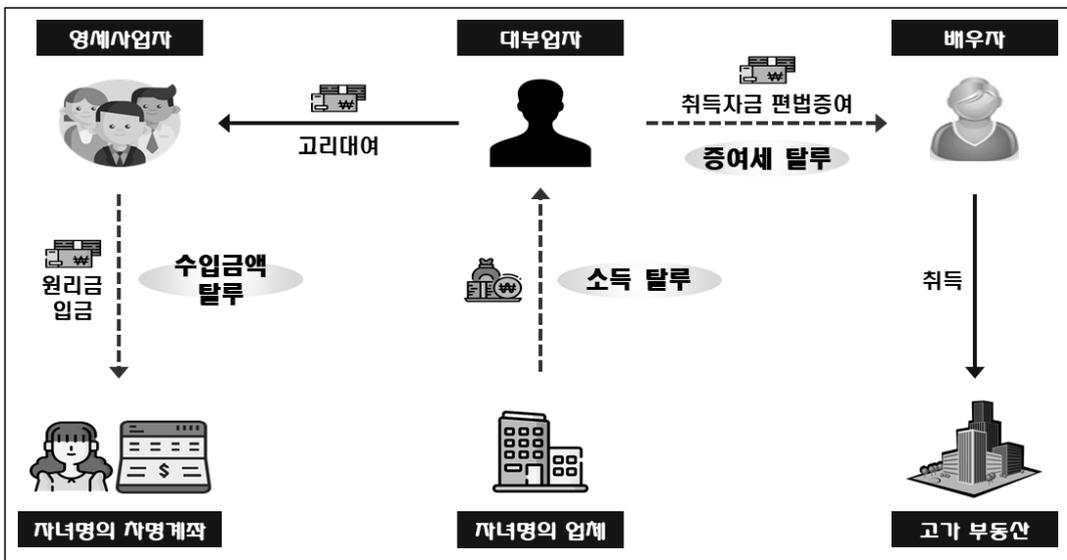
- 탈루 소득으로 최고급 스포츠카 및 아파트분양권을 가족명의로 취득하고, 해외여행, 주식투자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림

□ 조사방향

⇒ 현금매출 누락, 차명계정 운용 등 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 6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신고 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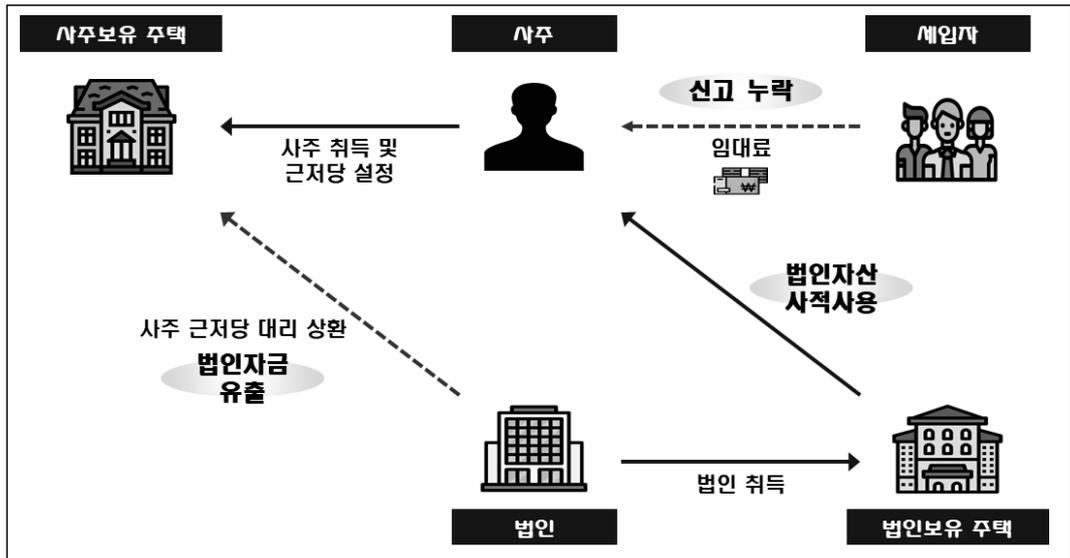
- 미등록 대부업자 □□□는
 -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두 배가 넘는 고리(高利)로 자금을 대여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수입금액 누락
 -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하여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사방향

⇒ 이자수입, 증여세 신고누락 혐의 엄정 조사

사례 7

사주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3채 이상의 사주 소유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을 탈루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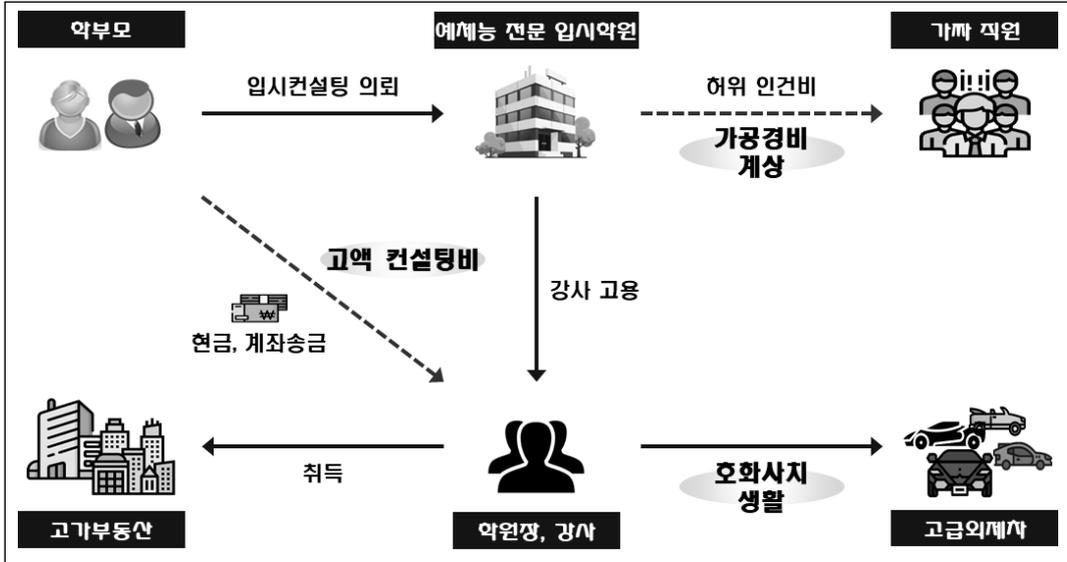
- ○ ○ 은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의 사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음에도
 -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며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보유 주택은 임대하며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음
 -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 신고해야 하나 전액 누락
- 또한, 사주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 유출

□ 조사방향

⇒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및 임대소득 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8

고객 대입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고가 부동산·외제차를 취득한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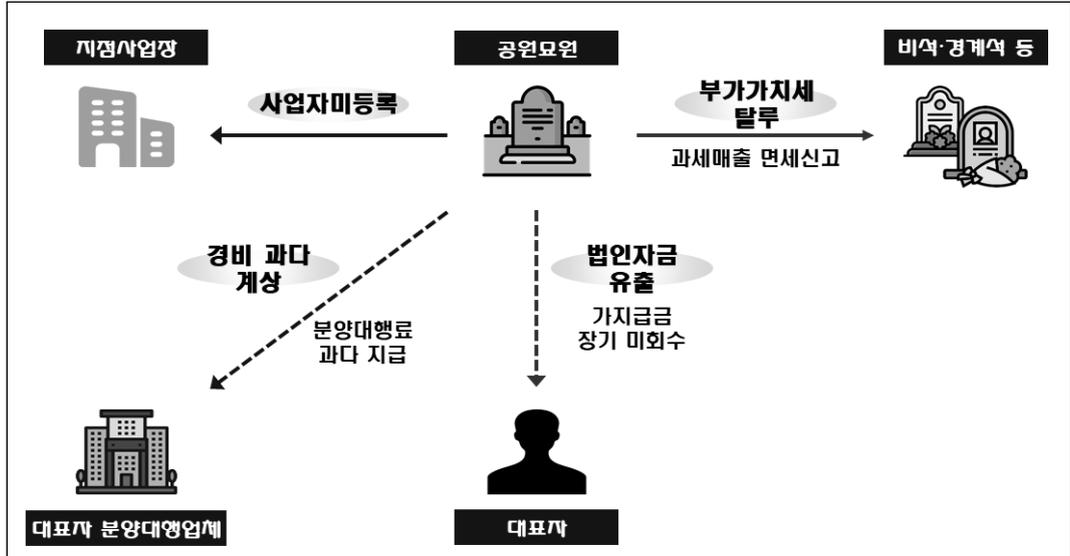
-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는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며 온·오프라인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음
 -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고객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탈루
- 또한, 학원장은 탈루소득으로 서울 강남 등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림

□ 조사방향

⇒ 수입금액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혐의 엄정 조사

사례 9

지점의 사업자 등록을 누락하고,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
가치세를 탈루한 공원묘원



□ 주요 탈루혐의

- □□□은 최근 인기가 있는 평장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급증한 공원묘원으로
 - 본점 외에 여러 곳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점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비석, 경계석 등의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 업체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과다한 분양대행료를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장기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

□ 조사방향

⇒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